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 - 162호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및 지원계획 통합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창업대국 조성을 위해 [1단계] 아기 유니콘을 예비유니콘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과 [2단계] 예비유니콘을 유니콘으로 키우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유망 혁신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1단계 아기유니콘 육성사업과 2단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사업 신청 기간 등이 상이함으로 세부내용을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 개요

□ 목적

○ 글로벌 창업대국 조성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후보기업을 집중 발굴하고, 체계화된 스케일업 지원

□ 사업별 개요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 규모	지원 기간	지원 내용	기업 부담금	신청 접수
아기유니콘	아래 요건 충족기업(①,② 모두 충족) ①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50개사	113	시장 개척자금 최대 3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상	3.04.~
육성사업	② 누적 투자실적 20억~100억 미만 또는 기업가치 300억원 이상	내외	1년	최대 50억원 이내 보증 등	-	3.22.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아래 요건 충족기업(①,②,③ 중 1) ① 시장검증, 성장성, 혁신성 충족기업 ②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기업 ③ 지역스타기업(누적투자 30억)	15개사 내외	-	최대 200억원 이내 보증 등	-	4.01 ~4.12.

2 [1단계] 아기유니콘 육성사업

1 사업개요

□ 지원목적

- 혁신적 사업모델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아기유니콘 기업을 발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육성
- □ 지원규모: 50개사 내외(최종 선정기업 기준)
- □ **지원대상**: 마감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아래 ①,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코넥스 상장기업은 지원 가능)
 - * 2017년 3월 23일 이후 설립한 창업기업으로 창업여부 기준표[참고1] 참조

① 시장검증, ②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① 시장검증 │ 국내외 벤처투자기관¹¹에서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누적)투자² 유치기업
- ② 혁신성 ·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평가등급 BB 등급³⁾ 이상인 기업
- 기업가치 산정기준에 따른 기업가치가 300억 원 이상인 기업으로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평가등급 B 등급³⁾ 이상인 기업

기업가치 산정기준⁴⁾

- 주식 투자 : 1주당 가격(투자액/주식수) x 총 발행 주식수
- 전환사채 투자 : 주식전환 가격 또는 투자심사시 벤처캐피탈이 산정한 기업가치 ※ 기준시점 : 누적 투자유치 실적 중 최종 투자유치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
- 1) 벤처투자기관의 인정범위는 [참고2] 참조
- 2) 투자인정 범위
 - 신청접수 기간내 투자계약, 주금납입 및 등기완료된 신규투자(보통주·우선주·CB·BW)에 한함(현물, 구주투자 제외)
- 3) 1차평가 통과기업에 대해 2차평가(기술평가/보증심사)를 실시하여 혁신성 충족 여·부를 판단(요건 ① BB등급 이상, 요건 ② B등급 이상)
- 4) 기업가치 산정시의 투자는 위 1)~2)에서 정한 투자기관 및 투자금액에 한함
 - 단, 최종투자가 Safe 투자인 경우, 직전 투자 건의 기업가치를 적용
- ② 기업가치 적용 기업은 누적 투자금액 20억원 미만 기업에 한함

□ 지원 제외대상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관련법규, 기술보증기금 규정 등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a 아기유니콘 육성사업 및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사업에 기 선정이력을 보유한 자(기업)
- (b) 기술보증기금이 정하는 보증취급 제한 기업[참고3] 및 보증제한 대상업종[참고4] 해당 시
- ⓒ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참고5] 해당 시
-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 보증관련 내규에 저촉 등으로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기업

- ②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중복선정 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 협약을 체결 하고 해당사업 수행(협약 미체결 시 자동으로 사업 참여 포기 처리)
 - → (주의) 동시 선정 시 각 사업의 협약체결일 이전에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고, <u>최초</u>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가능 함
 - *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경우에는 협약종료 또는 협약종료예정일이 공고 마감일로부터 3개월이내(협약종료일이 24년 6월 22일 이전인 기업)인 기업 지원 가능
 - ** '포스트 팁스' 지원사업 기 수혜기업은 해당 사업으로 받은 정부지원금만큼 차감 후 지원(경우에 따라, 아기유니콘의 정부지원금 없이 체결할 수 있음)
- (f)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지원 제외대상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취소 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 □ (시장개척자금) 신시장 (국내·외) 조사, 분석 및 협력 파트너 발굴 등을 위한 시장개척자금 최대 3억원 (정부지원금) 지원
 - * **총 사업비(100%)** 구성 : **정부지원금 50% 이하** + <u>선정기업 대응자금 50% 이상</u> (현금 10% 이상, 현물 40% 이하) ⇒ **최대 6억원**
 - ** 최종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총 사업비 구성(예시) >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선정기업 대응자금(50%) 현금 현물*		
(100%)	(50%)	,		
600백만원	300백만원	60백만원	240백만원	
100%	총 사업비의 5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40% 이하	

-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또는 시장개척 관련 업무(국내·외 마케팅, 영업 등)에 직접 참여하는 기존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계상
- ** [참고6] 시장개척자금 집행 비목 참조
- **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1년 ('24.5월~'25.4월 예정)

□ (특별보증) 같은 기업당 최대 50억원 이내 특별보증 지원

구 분	주요내용			
보증한도	• 운전자금 보증금액 20억 원까지 추정매출액과 투자유치금액 중 많은 금액의 1/2 금액으로 우대 적용			
보증비율 및	• 85% 부분보증(협약은행* 이용시 100%), 0.7% 고정보증료율			
보증료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옵션부여	• 보증지원 이후 후속투자 유치시 보증을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옵션부보증으로 취급 (옵션비율 : 보증금액의 20%)			

- * 같은 기업에 대한 지원가능 보증금액은 최대 50억원이며, 보증기관의 기보증금액(유동화회사보증의 유동화기초 자산 편입금액 포함 보증연계투자 제외)을 포함한 금액임
- * 신보(보증재단 포함) 거래기업은 전액상환 하거나 기보로 전환보증 가능한 경우에 지원 가능(중복보증 불가)
- * 시설자금은 서류제출일까지 설비도입계획(도입처, 품목, 수량 등), 도입자금 규모, 자금 조달계획이 확정되어 관련 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3 선정절차

	평기	l절차	및	추진	!일정
--	----	-----	---	----	-----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주요내용	일 정
사업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24.3.4(월)
▼		
온라인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 (www.k-startup.go.kr)	3.4(월) ~ 3.22(금)
▼		
① 1차 평가 (요건 및 기업가치 산정)	▶ 2차 평가 대상기업(150개사 이내) 선정 * 대상기업 기본요건 충족 여·부 및 기업가치 산정	~ 3월말
▼		
② 2차 평가 (기술평가·보증심사/ 유니콘선정협의회)	 ▶ (1단계 : 기술평가·보증심사) 1차 평가 통과기업을 대상 으로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실시 ▶ (2단계 : 유니콘선정협의회) 선정심의위원회 부의 대상기 업(70개사 내외) 선정 	~ 5월초
▼		
③ 최종평가 (최종선정위원회)	▶ 2차평가 통과기업 대상으로 전문가평가를 통해 최종선정	5월초
▼		
최종선정	▶ 최종 선정기업(50개사 내외) 발표	5월 중순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등	▶ 시장개척자금, 특별보증 등	5월말 ~

① **1차평가**(서류평가) **기준**

- (1단계: 요건검토)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누락여부 등) 검토
 - * 투자실적, 기업가치, 업력,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여부 등
- (2단계: 기업가치 산정) 투자실적에 따른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평가
- ② 2차 평가(기술평가 및 보증심사/심층평가) 기준
 - (1단계: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1차 평가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투자용 기술평가모형 적용) 및 보증심사 진행
 - (2단계: 유니콘선정협의회) 아래 평가지표에 의해 평가

평가지표	배 점	평가지표	배 점
1. 글로벌 진출 가능성	20	3. 기술평가등급	20
2. 투자유치금액	30	4. 사업성장 가능성	30
총 점	100		

[※] 총점이 동일할 경우 ① 글로벌 진출 가능성, ② 사업성장 가능성 ③ 투자유치금액, ④ 기술평가 등급 점수가 높은 순서 기준

③ 최종평가 (전문가평가) 기준

평가지표	배 점	평가지표	배 점
1. 글로벌 성공 가능성	30	3. 정책적 지원 필요성	20
2. 글로벌 유니콘 기업 가능성	40	4. 성과공유 가능성	10
총 점		100	

연계지원사업 안내

□ (VC 및 투자자 미팅 지원) 창업기업과 투자자와의 만남의 장을 제공하여 네트워크 구축 기회 및 성공적인 투자매칭을 지원

^{*} 가점 :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2점), K-Global Star 선정기업(2점), 지역TP 추천기업(1점)

- 아기유니콘기업 중 **후속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우수기업과 **기보 파트너스***와의 Private IR 피칭과 네트워킹을 유도
 - *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보가 선정한 투자 전문가 그룹(VC 114개사, 엔젤투자자 138개사)
- □ (상장 사전진단) 상장을 계획중인 기업에 기술특례상장 전문평가 절차를 준용하여 평가하고 필요사항 등에 대한 자문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아기유니콘 선정기업 중 상장 준비 기업
 - (지원내용) 상장 준비 컨설팅 및 자문 서비스 제공
- □ (글로벌 컨설팅) 해외진출 추진 기업에 대해 민간전문 컨설팅기관*을 매칭하여 글로벌 진출·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 *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컨설팅사, 회계법인, 법무법인을 어드바이저로 지정
 - (지원대상) 아기유니콘 선정기업 중 해외진출 희망 기업
 - (지원내용) 민간전문 컨설팅기관 매칭, 글로벌 진출·성장을 위한 맞춤형 all-in-one 지원
- □ (글로벌 IR) 창업기업과 해외 투자자(펀드)와의 만남의 장을 제공, 실질적인 투자매칭을 통한 성공적 딜메이킹 제고 및 해외진출 지원
 - (투자 상담회) 협력기관 보유 네트워크를 통해 참여기업에 관심있는 VC를 사전 파악하여 구체적 투자 논의를 위한 1:1 미팅기회 제공
 - (투자 IR) 글로벌 VC 대상, '글로벌 IR'을 개최, 아기유니콘 기업에 해외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 기회 마련
 - (네트워킹) 현지 투자자 및 한인 창업기업과 교류를 통해 창업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기회 제공
- □ (R&D기획 지원) 참여기업의 R&D 수행의 질적 생산성을 제고하고, 향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술 로드맵 제시
 - 중기부 및 과기부 등 부처 R&D 과제 신청 예정 기업 대상 선행기술 조사, 기술로드맵 R&D과제 기획 컨설팅 제공

- ◈ 본 사업에 신청하는 자(기업)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②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명단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조치 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아기유니콘 및 [2단계] 예비유니콘 기업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하더라도 동시 신청은 불가하며, 동시 신청한 경우 1단계, 2단계 모두 신청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업은 동 공고문,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본 사업 세부 지침, 전담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습니다.
- ㅇ 최종 선정기업은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그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창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협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최종 선정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제출과 점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최종 선정기업은 협약 종료년도 다음 해부터 5년간 창업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사업비는 협약 후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됩니다.
- ㅇ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것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평가과정의 요건검토 및 매 평가과정을 비롯하여 협약체결 전후 에도 요건부적합이 확인될 시 요건탈락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주의) 창업사업화를 목적으로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타 사업과 동시 수행 불가 합니다.
 - * (창업지원사업) 2024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앙부처 "사업화" 중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 동시 선정 시 각 사업의 협약체결일 이전에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고,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가능 함
 - (예시) 타 사업의 협약체결을 `24.5월(또는 이전)에 진행한 경우「아기유니콘 육성 사업」의 요건 탈락대상이며, 기 체결한 타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창업지원사업을 진행중인 경우도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내(~'24.6.22) 타 수행사업의 협약 종료예정인 경우에는 동 사업 신청(지원) 가능
 - (예시) 사내벤처육성프로그램(`23) 협약 종료 예정일이 `24.6.22(또는 이전)인 경우 신청 가능

6 문의처

구 분	담당기관	문의처
사업내용 관련	기술보증기금	051-606-7694, 7656
중복사업 수혜 여부, 보조금 관련	창업진흥원	02-2039-1498, 1320
K-Startup 시스템 이용문의 (서류제출 등)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국번 없이 1357

[2단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1	사업개의	<u>a</u>
	[[원목적	
0	시장검증・	성장성·혁신성 요건을 갖춘 혁신기업에 스케일업 금융을
	지원하여	유니콘 기업으로의 도약 촉진
J	시원규모 :	15개사 내외(최종 선정기업 기준)
*	신청기업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디원대상 :	비상장기업*으로 아래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딩
		하는 중소기업 * 코넥스 상장기업은 지원가능
1	① 시장검증	, ② 성장성, ③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시장검증	○ 국내외 벤처투자기관 ¹⁾ 에서 50억원 이상(누적) 투자²⁾유치기업
		i) 최근 3개년 매출성장률이 연평균 20% 이상 [*] 인 기업('20.12.31 이전 설립)
	~ HTLH	* 전년도말('23.12.31) 상시종업원 ³⁾ 10명 이상인 기업으로, '23년도 매출액 ⁴⁾ 이 '20년도 매출액 대비 72.8% 이상 증가
	② 성장성	ii) 전년도 매출액이 직전년 대비 100억 원 이상 증가('21.1.1 이후 설립)
		* 전년도말('23.12.31) 상시종업원 10명 이상인 기업으로, '23년도 매출액 ⁴⁾ 이 '22년도 매출액 대비 100억 원 이상 증가
	③ 혁신성	○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평가등급 BB 등급 ⁵⁾ 이상인 기업
2		정기준에 따른 기업가치가 1,000억 원 이상인 기업으로 기술보증기금 나등급 B 등급 ⁵ 이상인 기업
	기업가치	• 주식 투자 : 1주당 가격(투자액/주식수) x 총 발행 주식수
	산정기준	• 전환사채 투자 : 주식전환 가격 또는 투자심사시 벤처캐피탈이 산정한 기업가치 ※ 기준시점 : 누적 투자유치 실적 중 최종 투자유치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
3	지역스타기업	※ 기문시험 · 구역 구시규시 일역 중 최종 구시규시 시험을 기문으로 한경 ⁷⁾ 으로 ① 시장검증, ② 성장성, ③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시장검증	○ 국내외 벤처투자기관 ¹⁾ 에서 30억 원 이상(누적) 투자 ²⁾ 유치기업
	② 성장성	○ ① 의 성장성과 요건 동일
	③ 혁신성	○ ① 의 혁신성과 요건 동일

- 1) 벤처투자기관의 인정범위는 [참고2] 참조
- 2) 투자인정 범위
 - 신청접수 기간내 투자계약, 주금납입 및 등기완료된 신규투자(보통주·우선주·CB·BW)에 한함(현물투자, 구주투자 제외)
- 3) 상시종업원은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인정
- 4) 매출액은 감사보고서상의 매출액을 우선 적용(감사보고서 미작성기업은 표준재무제표상 매출액)
- 5) ① 시장검증, 성장성 요건, ② 기업가치 요건, ③ 시장검증, 성장성 요건 통과기업에 대해 2차평가 (기술평가/보증심사)를 실시하여 혁신성 충족 여·부를 판단(요건① ③ BB등급 이상, 요건② B등급 이상)
- 6) 기업가치 산정시의 투자는 위 1)~2)에서 정한 투자기관 및 투자금액에 한함
- 7) 지역스타기업육성을 위해 지자체에서 선정된 기업

□ 지원 제외대상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관련법규, 기술보증기금 규정 등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기술보증기금이 정하는 보증취급제한(보증금지기업.제한기업)[참고3] 및 보증제한 대상업종[참고4] 해당 시
- ⓑ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참고5] 해당 시
-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 보증관련 내규에 저촉 등으로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기업
- ※ 지원 제외대상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취소 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 (특별보증) 같은 기업당 최대 200억원 이내 특별보증 지원

구 분		주요내용
운전자금 보증		• 운전자금 보증금액 30억 원까지 추정매출액과 투자유치금액 중 많은 금액의 1/2 금액으로 우대 적용 • 최종평가 상위 30% 이내 기업은 보증승인금액의 1.3배 지원(보증한도 30% 추가)
한도*	R&D 자금	• 최대 20억 원 한도 (R&D에 필요한 재료비, 시제작비, 인건비 등)
	시장개척자금	• 최대 10억 원 한도 (글로벌 진출자금에 한함)
보증비율 및 보증료		• 85% 부분보증(협약은행[*] 이용시 100%), 1%^{**} 고정보증료율 * <u>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u> ** 사회환원·공헌활동,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시 최대 0.2%p 추가 감면
지원방식		• 최대 200억 이내의 한도를 부여하고 100억원까지는 선정연도(2024년)에 우선 지원하고 잔여금액는 차년도(2025년)에 지원
상환의무 부여		• 본건 보증금액 이상의 누적후속투자를 유치 시, 보증금액 10% 상환의무 부여
옵션부여		• 보증지원 이후 후속투자 유치시 보증을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옵션부보증으로 취급(옵션비율 : 보증금액 10%, 최대 5억원)

- * 같은 기업에 대한 지원가능 보증금액은 최대 50억원이며, 보증기관의 기보증금액(유동화회사보증의 유동화기초자산 편입금액 포함 보증연계투자 포함)을 포함한 금액임
- * 신보(보증재단 포함)거래기업은 전액상환 하거나 기술보증기금으로 전환보증 가능한 경우에 특별보증 지원 가능(중복보증 불가)
- * 시설자금은 서류제출일까지 설비도입계획(도입처, 품목, 수량 등), 도입자금 규모, 자금 조달계획이 확정되어 관련 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3 선정절차

□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주요내용	일 정
사업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24.3.4(월)
Û		
온라인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 (www.kibo.or.kr/dbranch)	4.1(월) ~ 4.12(금)
Ţ		
① 1차 평가 (요건검토·서면평가)	▶ 2차 평가 대상기업(50개사 이내) 선정 * 기본요건 충족 여·부 검토 및 서면평가	~ 4월말
Ŷ		
② 2차 평가 (기술평가·보증심사 /유니콘선정협의회)	 ▶ (1단계)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실시 *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를 위해 기술보증기금 직원의 사업 장 현장실사 및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 (2단계) 최종평가 대상기업(20개사 이내) 선정 * 투자금액, 기업가치, 기술평가등급 등 지표 활용 	~ 5월말
Ţ		
③ 최종평가 (최종선정위원회)	▶ 2차평가 통과기업 대상으로 공개 발표 및 전문가평가를 통해 최종선정 * 최종선정심의위원회에는 국민심사단 참여 가능	6월 중순
Ŷ		
최종선정	▶최종 선정기업(15개사 내외) 발표	6월말
Û		
보증지원	▶관할 영업점에서 보증서 발급	7월 ~

□ 단계별 평가 기준

- ① 1차 평가(요건검토 및 서면평가) 기준
 - (1단계: 요건검토)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누락여부 등) 검토
 - (2단계: 서면평가) 아래 평가지표에 의해 평가

평가지표	배 점	평가지표	배 점	
1. 글로벌 지향성	20	4. 매출규모	20	
2. 투자유치금액	25	5. 고용인원	10	
3. 기업가치	25			
총 점		100		

[※] 총점이 동일할 경우 ① 글로벌 지향성, ② 투자유치금액, ③ 기업가치, ④ 매출규모 점수가 높은 순서 기준 * 가점: 아기유니콘 기업(3점),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2점), K-Global STAR 선정기업(2점), 지역스타기업(2점)

② 2차 평가(기술평가 및 보증심사/보증심의협의회) 기준

- (1단계: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1차 평가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투자용 기술평가모형 적용) 및 보증심사 진행
- (2단계: 유니콘선정협의회) 아래 평가지표에 의해 평가

평가지표	배 점	평가지표	배 점
1. 글로벌 진출 가능성	20	4. 매출액 증가율	10
2. 투자유치기간	15	5. 고용증가율	5
3. 기술평가등급	20	6. 특별보증 지원 적합성	30
총 점	100		

^{*} 감점 : 평판리스크 관련 자료 미제출 또는 향후 대응방안 등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③ 최종평가(국민·전문가평가) 기준

평가지표	배 점	평가지표	배 점
1. 글로벌 성공 가능성	30	4. 자금지원 효과성	5
2. 글로벌 유니콘 기업 가능성	40	5. 성과공유 가능성	5
3. 특별보증 지원 타당성	20		
총 점		100	

4 연계지원사업 안내

- □ (M&A 지원) 예비유니콘 특별보증한도(최대200억원) 이내에서 기술 혁신 M&A 자금* 및 소요자금** 추가 지원
 - * 구조조정 유형(기업인수, 기업합병)에 따른 별도 가치평가를 통해 소요자금 산정
 - ** 기업인수에 소요되는 인수자금 및 부대비용

□ 정책금융 연계

- (산업·기업B) '24년도 정책금융 공급금액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비유니콘 선정기업에 대한 연계 대출 지원
 - * 예비유니콘 기업 정책금융 공급목표 : ('23년) 700억원 → ('24년) 800억원
- (성장금융)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한국성장금융 등이 조성한 '혁신성장펀드'를 연계하여 대규모 후속투자 유치 지원
 - * 글로벌 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한 '23년도「혁신성장펀드」조성계획(금융위, '23.2월)
- (중진공)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선정기업에 대하여 중진공의 투자 조건부융자(금융) 및 수출바우처 연계지원
- □ (해외진출 지원) 예비유니콘 선정기업 중 해외진출 전문가 매칭 등을 희망하는 기업을 중진공 KSC·GBC 사업 지원대상으로 추천
- □ (글로벌 컨설팅 지원) 선정기업의 해외진출전략 수립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의 해외진출 프로그램 연계

5 유의사항

- □ (자료제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각 단계별 평가를 위한 기술보증기금등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 (성과관리) 선정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의 성과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등사업 성과분석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요청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1단계] 아기유니콘 및 [2단계] 예비유니콘 기업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동시 신청은 불가하며, 동시 신청한 경우 1단계, 2단계 모두 신청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 이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고문 내용 미숙지 및 자료의 입력 오류 또는 누락 등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선정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허위서 류를 제출한 경우 선정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지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평판리스크 확약서[별첨2] 미제출 또는 향후 대응방안 등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2·3차 평가에 반영되오니, 서류작성, 제출 및 발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선정 후 3개월이내 보증서를 발급받지 않을 경우, 보증승인

6 문의처

구 분 담당기관		문의처
사이비요 고급 모이	기술보증기금	051-606-7655
사업내용 관련 문의	기술보증기금	051-606-7671

및 예비유니콘 기업 선정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아기유니콘) 2024년 3월 4일(월) ~3월 22일(금), 15시까지 (예비유니콘) 2024년 4월 1일(월) ~ 4월 12일(금), 15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절차 >

아기 유니콘	① 'K-Startup' 사이트접속(www.k-startup.go.kr) \rightarrow ② 사업신청관리 클릭 \rightarrow ③ 회원가입(개인 회원 및 로그인) \rightarrow ④ '2024년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및 지원계획 통합공고' 클릭, 사업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rightarrow ⑤ 기본정보 입력 \rightarrow ⑥ 사업계획서·증 빙자료 업로드(용량제한 50MB 유의) \rightarrow ⑦ 제출('마이페이지'에서 신청 및 접수완료 확인)
예비 유니콘	①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접속(www.kibo.or.kr/dbranch) → ② 'Quick MENU 예비유니콘신청' → ③ '로그인' → ④ '양식다운로드', '신청하기' → ⑤ 기본정보 입력 → ⑥ 기술사업계획서·투자유치내역서 등 업로드(용량제한 각 항목당 15MB 유의) → ⑦ 제출('신청내역 조회'에서 신청 확인) * 신청·접수 후 반드시 접수완료 상태를 확인하실 것(접수증 출력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별첨1]' 참고

^{*} 제출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인터넷 신청시 등록하며, 모든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에 한해 인정 (마감일 접속폭주로 인한 접수 지연·장애 등 발생 가능하므로 사전 등록 요망)

□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아기	예비	비고	필수여부
1	기술사업계획서 [예비유니콘用, 아기유니콘用]	0	0	(별첨2-1, 2)	
2	투자유치내역서	0	0	(별첨3)	
3	투자계약서 사본(투자유치내역서 상 투자계약서 사본 일체)	0	0	-	
4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기업 자가점검표	0	0	(별첨4)	
5	사전동의서 [신청기업用, 개인用]	0	0	(별첨5-1, 2)	
6	고용보험사업장자격취득자 명부 (기준년도('20.12.31)*, 전년도말('23.12.31) 기준), 전월말('24.2.29) 기준) * '21.1.1 이후 설립 법인의 경우 '21년말 명부 제출	0	0	-	필수
7	주주명부	0	0		
8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법인등기부등본) * 말소사항 포함, 전체 페이지 제출	0	0	공고일 이후 발급분	
9	감사보고서(2020~2023년) (감사보고서 미작성기업은 표준재무제표)	0	0		
10	평판 리스크 관련 확약서	-	0	(별첨6)	
11	글로벌 지향수준 체크리스트	-	0	(별첨7)	
12	창업기업확인서(cert.k-startup.go.kr) * 발급까지 접수일로부터 최대 10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소요	0	-	-	

13	K-Global STAR 선정서	0	0	-	
14	지역스타기업 지정서	-	0	-	해당시
15	지역TP 추천서	0	-	-	

- * 최종평가 대상자는 PPT 발표자료 별도 제출 (추후 안내)
- ** 평가·심사 과정 중 필요시 추가 제출서류 요청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
- 참 고 1. 아기유니콘 육성사업 창업여부 기준표
 - 2. 벤처투자기관
 - 3. 기술보증기금 보증취급제한
 - 4. 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 대상업종
 - 5.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
 - 6. (아기유니콘) 시장개척자금 집행 비목
- 별 첨 1. (예비유니콘) 온라인 사업 신청 매뉴얼
 - 2. 기술사업계획서(예비유니콘用, 아기유니콘用)
 - 3. 투자유치내역서
 - 4.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기업 자가점검표
 - 5. 사전동의서(신청기업用, 개인用)
 - 6. (예비유니콘) 평판리스크 관련 확약서
 - 7. (예비유니콘) 글로벌 지향수준 체크리스트

아기유니콘 육성사업 창업여부 기준표

신청/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창업(사	·업을 개시한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상속/증여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개인기업		이종창업	_	창 업
#C B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폐업 3년 까지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창업아님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항업아님 ************************************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차여이니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개인사업자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게던자답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이종창업	-	창 업
법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ᄃᅎᅕᅡ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 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유지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 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71710711120	이종		창 업

-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 동종의 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벤처투자기관

- □ 아래의 유형에 해당하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실적 인정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 (1)~(6)에 따른 자
 - 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 ②「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 ③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④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⑥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에 따른 기관
 - ①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②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 ③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 ④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⑥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 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해당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자
 - ⑨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 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 ① 기술보증기금
 - ③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④ 13의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⑤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 3.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산운용사, 증권사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인과 개인 투자자 (온라인 소액투자자 포함) 투자실적 제외

기술보증기금 [이하 '기금'] 보증취급 제한 기업

< 보증금지기업 >

- 1.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2. 제1호의 자가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 3. 제1호의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 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자
 - 나,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

< 보증제한기업 >

- 1. 휴업 중인 기업
- 2. '보증금지기업' 제1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 3. '보증금지기업' 제1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4.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 가. 대표자
 - 나. 실제 경영자
 - 다.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관계기업 중 주력기업
- 6. 파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7.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 *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연체,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연체 4회 이상
- 8. "금융 부조리 관련 기업*"으로서 보증이 제한되고 있는 기업
 - * 보증브로커 개입기업, 허위자료 제출기업, 금품제공기업, 부정청탁기업 등
- 9. 기금,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라 한다) 또는 「지역신용보증 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보증재단"이라 한다)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 기업 포함하되 기금 내규에 따라 경영개선지원이 확정된 기업은 제외)
- 10. 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 11. 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중 보증금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나.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 다. 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 라. 유동화회사보증의 개별회사채 발행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서 사채인수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채무불이행상태에 있는 기업
-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 가. 제12호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보증금지기업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제12호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공동경영자 포함)
 - 다. 제12호 기업의 실제 경영자
- 14. 제12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 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 대상업종

구 분	세부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T 正	세구립증	新	舊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오락기구 제조업 ※ 불건전 여·부는 도박 해당여·부로 판단	3340	3340	
도박 게임 관련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소매업도박기계 임대업경품용 상품권 발행업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6463, 47640 69390 75999 91113 91249	46463, 47640 69390 75999 91113 91249	
사치 향략 관련	 주류 중개업 귀금속 중개업 주류 도소매업 귀금속 도소매업 주점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마사지업 	46102 46109 46331, 47221 46492, 47830 5621 91223 91291 96122	46102 46109 46331, 47221 46492, 47830 5621 91223 91291 96122	
부동산 관련	· 주거용 건물 임대업 ·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68111 68121 68221, 68222	68111 68121 68221	
기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전화방복권 발행 및 판매업점술업 및 유사 서비스업	59142 91229 91241 96992	59142 91229 91241 96992	

참고5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

구 분	세부항목
	① 실제경영자가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실제경영자 본인이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임
결격	※ 다만, 실제경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모두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 시 충족으로 심사, 최대주주인 관계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와 동일한 경우에도 요건 충족한 것을 심사
요건*	② 실제경영자가(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금융질서문란, 허위자료 제출 또는 사해행위 사실 없음
	③ 실제경영자가 책임경영이행약정 위반 사실 없음
	④ 실제경영자(본인이 실제경영자인 기업 포함)가 정책금융(보증부대출 포함)에 대한 용도 외 사용 사실 없음

^{*} ①~④ 중 하나라도 미충족 시 지원(신청) 불가

[아기유니콘] 시장개척자금 집행 비목

□ 시장개척에 필요한 직접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비 목	내 용
광고선전비	브랜드 개발 비용, 디자인 개발, 타깃 시장 홍보물(영상, 광고, 일간지등) 제작비, 온·오프라인 광고게재비, 홈페이지 제작비 등
인건비	마케팅, 시장조사 등을 위해 기업 소속직원 및 단기근로자에 지급하는 급여
외주용역비	창업기업이 시장확대를 위한 제품개선 필요 시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지급수수료	시장개척을 위한 거래 수행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기계장치비	창업기업 보유 제품(서비스) 제작 관련 기자재 비용 ※ 현물 계상만 가능
재료비	창업기업 보유 시약 등 재료비 ※ 현물 계상만 가능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서비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비용